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항공기상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구분	인원	응시번호	성명
기간제 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1명	B-006	이O신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2.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 제출기한: 2022. 12. 28.(수)
- 제출방법: 등기우편
 -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10호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1부
 - 사진(3cmX4cm) 1매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1]
 - 이력서 [서식2]
 - 공정채용 확인서 [서식3]

3. 유의사항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타 문의는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032-740-2803)으로 연락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로 채용됨에 있어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의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2022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항공기상청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본인은 항공기상청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인)

항공기상청장 귀하